



## 의사상자 적용범위

### 구조행위란?

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 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 
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)

### 구조행위의 적용범위

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)

01 강도·절도·폭행·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 
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 
구조행위를 한 때

02 자동차·열차,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 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 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03 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 등으로  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 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04 천재지변, 수난, 화재, 건물·축대·제방의 붕괴 등으로  
일어날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
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 
구조행위를 한 때

0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 
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 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06 해수욕장·하천·계곡, 그 밖의 장소에서  
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 
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 
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,  
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자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 
구조요청을 받은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 
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

0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 
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 
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

### 적용예외

-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 
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-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 
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



보건복지부



문의사항 |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사상자 업무 담당과  
(예시 :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국민생활지원과, 주민복지과 등)

## 의사상자 지원제도

“의사상자 지원제도”는  
직무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 
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 
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(義死者)  
또는 의상자(義傷者, 1~9급)로 인정하고,  
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 
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 
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 
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)

###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

####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

##### 의사자 유족, 의상자(또는 그 가족)

인정신청 인정결과 통보

##### 주소지(또는 구조행위) 관할 시·군·구

인정여부 결정청구 인정결과 통보

##### 시·도

인정여부 결정청구 인정결과 통보

#####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

#### 신청시 구비서류

-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 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
 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·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 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####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,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

###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

## 의사상자 지원내용

### 보상금

#### ● 지금대상

의사자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및 형제자매) 중 선순위자  
의상자 의사자 본인

#### ● 지급금액 (2018년 기준 215,270천원)

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‘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’  
의상자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/100 ~ 5/100  
\*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
#### ●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### 의료급여(1종)

의료급여법

#### ● 대상 의사자 유족(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및 형제자매) 의상자 1~6급 의사자 본인

#### ●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#### ●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

### 교육보호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#### ● 대상 의사자의 자녀, 1~6급 의사자 및 그 자녀

#### ● 지원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

#### ●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### 장제보호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#### ● 대상 의사자

#### ● 금액 75만원(2018년 기준)

\*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

#### ●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### 취업보호

#### ● 대상 의사자 유족 의사자의 배우자, 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 의상자 1~6급 의사자 본인 및 가족(배우자, 자녀)

#### ● 신청 시·군·구 담당부서,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

### 국립묘지안장(이장)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●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(1~3급) 중 사망한 자

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(보훈처 소관)이 안장을 결정한 경우 안장 가능

### 고공 등의 이용지원

#### ●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

의사자 유족증 유족 중 선순위자(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)  
의상자 증 의사자 본인, 배우자, 자녀

#### ●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

100/100	고공 및 능원, 국공립 공원, 돌립기념관, 전쟁기념관 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 제외)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
---------	---

50/100	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

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

#### ●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, 자녀

#### ● 신청 의사자(1~6급) 본인, 배우자, 자녀

#### ● 가산점

의사자, 의사자 본인	의상자, 배우자, 자녀
만점의 5%	만점의 3%

\* 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(6급 이하 대상),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시 적용

### 주택특별공급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#### ● 대상 의사자 유족, 의사자

#### ● 기준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(1세대 1주택 기준)

#### ●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·도지사